



농림축산식품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야생조류 H5, H7형 조류인플루엔자(AI) 항원 검출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 알림

1. 관련: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-566('21.1.19.)호, -567('21.1.19.)호, -568('21.1.19.)호, -569('21.1.19.)호, -591('21.1.19.)호, -594('21.1.19.)호, -595('21.1.19.)호, -596('21.1.19.)호, -597('21.1.19.)호, -598('21.1.19.)호, -599('21.1.19.)호, -600('21.1.19.)호, -602('21.1.20.)호
2. 서울 중랑구(중랑천), 경기 고양시(창릉천·대장천)·여주시(청미천), 충북 충주시(달천)·청주시(무심천), 전북 군산시(미제저수지)·김제시(단입제·원평천), 전남 담양군(담양습지), 경남 창원시(주남저수지)·진주시(남강), 제주 제주시(하도리)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시료에 대한 검사 결과 H5/H7형 조류인플루엔자(AI) 항원이 검출되어, 야생조류에 의한 AI 발생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방역조치를 알려 드리니, 관계기관에서는 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□ 검출 시·도(서울, 경기, 충북, 전북, 전남, 경남, 제주)

- "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(AI SOP)"에 따라 해당 야생조수류 및 그 시료를 채취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방역지역(야생조수류 예찰지역) 설정
 -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에서 사육되는 가금류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
 - 시료채취일 기준으로 21일 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(제24조)에 따른 예찰지역에 해당되는 방역조치 실시
 - 방역지역 내 가금 및 식용란 등에 대해서는 AI 긴급행동지침(SOP)에 의거하여 이동제한 및 방역지역 내 예찰·검사 실시
 - * 검사방법: (닭) 임상검사, 전업농의 경우 분변 또는 폐사축 간이키트검사(필요 시 혈청검사)
(오리·기러기·거위) 항원검사(rt-PCR), 필요시 혈청검사
 - 방역지역 내 의심축 신고 시 즉시 농식품부 AI 상황실에 보고
-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이 타 시·도와 겹칠 경우 신속히 통보하고 해당 시·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단방역 실시
- 관내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농가 진입로 매일 소독

※ 정밀검사 결과 A바이러스가 저병원성으로 확진되더라도 철새도래지 및 인근 농가에 대하여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·예찰 지속 실시

- 농가에 야생조류 접근 및 침입 차단을 위하여 축사에 그물망을 꼼꼼히 정비하고 문단속 및 소독 등 차단방역 철저 지도
 - 농가 진입로(2-3m 이상)와 농장 둘레(50cm)에 생석회 벨트 구축 실시
 - * 닭, 오리 등 가금 사육농가는 방사사육 금지
-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 일일 소독·임상검사 및 차단방역 강화
 - 해당지역 가금농가 전담 공무원이 매일 임상 예찰 및 차단방역 지도·홍보
 - * 가금농가 대상 축산관련 모임 및 행사 참여 금지,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등 지도 홍보 실시(플랜카드, 리후렛,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홍보)
 - 시·군·구, 계열화사업자 등을 통해 계약사육농가 및 개인농가에 대해 일일 소독 후 보고토록 조치
- 검출지점 반경 3km내 가금농가에 대해 매일 소독하고(공동방재단 등) 농가별 진출입로에 생석회 도포
- 축산차량에 대해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 진입금지 홍보 및 관리 철저
- 해당 지자체는 검출지점에 대한 차량 및 사람 접근 금지 통제와 소독 강화 조치

□ 타 시·도

- 철새도래지, 저수지, 소하천과 인근 농가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강화
 - 관내 철새도래지에 대해 광역방제기 등을 동원, 매일 주변도로 및 농가 등 소독 철저
- 가금농장 및 축산 관련 작업장에 대해 **임상예찰 및 소독 철저 지도·홍보**
 - * 가금농가 대상 철새도래지(이번 AI 검출지역 포함) 방문 자제 등 지도 홍보 실시
- 농가에 야생조류 접근 및 침입 차단을 위하여 축사에 그물망을 꼼꼼히 정비하고 문단속 및 소독 등 차단방역 철저 지도
- 등록 축산차량에 대해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 진입금지 홍보 및 관리 철저

□ 농림축산검역본부

- 전국 가금농가에 대해 야생조류 항원 검출내역을 SMS 문자 홍보 실시
- 시료채취일 기준, 이전 14일간 시료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방문 또는 통행한 축산 관련 차량의 소유주를 대상으로 방역 홍보
 - * KAHIS를 통한 GPS 음성안내 및 SMS 문자 발송 등
- 국경검역 강화 및 불법 휴대 애완조류 등 가금류에 대한 검역 철저
-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매일 해당 검출 도래지 및 방역지역 내 농가 방역추진 사

항 지도·점검

□ 관계부처 협조사항(환경부,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)

- 야생철새 GPS 수신에 따른 철새 국내 유입 등 이동경로 확인 시 "철새정보시스템"에 따라 우리 부 및 관련 기관에 해당 내용 즉시 알림
 - 「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(환경부)」에 따른 야생동물 감염사례 확인 시 조치사항 추진

□ 가축위생방역지역본부

- AI 바이러스 검출지역 인근 야생조류 폐사체 예찰 강화
-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방역지역 내 가금 사육농가 대상으로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고, 우리 부로 매일 14시까지 실적 보고

□ 한국농어촌공사

- 지자체 환경부서와 협조하여 폐사체 발견 즉시 수거 및 검사 의뢰 조치

□ 농협경제지주

- 공동방제단을 활용하여 방역지역 내 가금 사육농가 대상 소독 실시
 - ※ 정밀검사 결과 AI바이러스가 저병원성으로 확진되더라도 철새도래지 및 인근 농가에 대하여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·예찰 지속 실시

□ 관련 단체(협회) 및 계열화사업자 등

- 소속 농가와 회원 등을 대상으로 AI 차단방역 조치사항 홍보
 - 매일 임상예찰 및 소독 실시토록 홍보를 강화하고, AI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(1588-4060, 9060)하도록 지도 홍보
 - 철새도래지(이번 AI 검출지역 포함) 및 인근 지역 방문 자제 홍보
 - 농가에 야생조류 접근 및 침입 차단을 위하여 축사에 그물망을 꼼꼼히 정비하고 문단속 및 소독 등 차단방역 철저 지도
 -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 진입 금지 철저 홍보

붙임 관련 공문 각 1부. 끝.

